이 보도자료는 2021. 4. 30. 12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찰 PROSECUTION SERVICE	수원지방검찰청 전문공보담당자 인권감독관 강수산나 전화 031-5182-4253	보 도 자 료 2021. 4. 30.(금)

제목	前 경기도 공무원의 반도체산업단지 유치예정지 투기 사건 수사결과 - 업무수행 중 지득한 개발정보로 재물 취득한 피의자 2명 기소 및 매입 토지 국고 환수

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(제11조 제1항)

- 금일(4. 30.) **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**(부장검사 박광현)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산업단지 유치예정지 정보를 이용, 인근 부동산을 매수하여 재물을 취득한 **前 경기도 OO과 소속 팀장 A(5급)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,** 이에 공모한 처 B(D법인 이사)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음
  - A는 **'C사 반도체사업 산업단지 유치사업'**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, 2018. 8.경 유치예정지 인근 토지 1,559㎡(약 470평)를 B가 운영하는 D법인 명의로 5억 원에 매수하고, 수용예정지 842㎡(약 255평)를 장모 명의로 1억 3천만 원에 취득
  - 2019. 2.경 C사 반도체사업 산업단지 유치 확정 후 피의자들이 매입한 위 토지의 거래가는 3~5배 상승

- 피의자들이 취득한 토지는 검·경간 긴밀한 협조로 신속히 **몰수보전 조치**하였고, 판결 확정 후 공매를 통해 **국고 귀속** 예정임

1 피의자

- **A**[51세, 前 경기도 OO과 소속 팀장(5급), 구속] ※ '19. 5. 퇴직
- **B**[50세, D법인 이사] ※ A의 처

2 피의사실 요지

- 피의자 A는 경기도 OO과 소속 팀장으로 'C사 반도체사업 산업단지 유치사업' 업무를 진행하며 알게 된 '유치예정지 정보'를 이용, 처 B와 공모하여 2018. 8.경 B가 운영하는 D법인 명의로 위 산업단지 유치예정지 인근 토지 1,559㎡를 5억 원에 매수하고, 수용예정지 842㎡를 장모 명의로 1억 3천만 원에 낙찰받아 취득

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】

※ 제86조(업무상 비밀이용의 죄) ① 공직자가 제7조의2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.

- 제7조의2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3 수사 경과

- 3. 22.~23. '경기도 前간부, 반도체클러스터 주변 땅 투기 의혹' 언론보도
- 3. 23. 경기도, 경기남부경찰청에 A, B에 대한 고발장 제출
- 4. 5. 법원, A, B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경기남부청의 **몰수보전 신청 인용**
- 4. 8. 피의자 A 구속(A에 대하여 구속영장 신청 및 보완수사 요구, 영장 재신청 및 청구, 발부)

※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 검사가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직접 참여

- 4. 16. 피의자 A, B 검찰 송치
- 4. 28. 검찰시민위원회 - 피의자 B에 대한 기소 여부 심의
- 4. 30. 피의자 A 구속 기소, 피의자 B 불구속 기소

4 수사 결과

- **산업단지 유치업무를 직접 담당한 공무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부동산 취득**

-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C사와 지속적으로 접촉하였고, A는 위 업무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산업단지 유치가 유력해질 무렵 인근 부동산 집중 매입
- B는 A와 긴밀히 연락하며 산업단지 인근 부동산 매입 과정에 가담한 정도가 상당한 사실 확인

- **부동산 몰수보전 경위**

- D법인은 A, B가 부동산 취득을 위해 만든 법인으로 부동산 매입시 매매대금을 전적으로 A가 부담
- 장모 명의의 부동산 취득도 수용예정지 정보를 알게 된 A가 감정가를 상회하는 금액에 단독 입찰하여 낙찰받았으며, 대금도 A가 부담

☞ 즉, 위 토지는 A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에 해당

5 향후 계획

- 본 건은 『**수원지방검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**』 편성 후 피의자 구속 및 범죄수익 몰수 보전 조치 과정에서 **검·경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사 성과를 낸 사안임**
- 향후에도 **검찰은 경찰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바탕**으로 부동산 투기 범죄에 **엄정 대응**하고, **범죄수익을 철저히 국고에 환수**할 계획임 ▨